

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(2005. 7. 31부)됨에 따라 장학생의 선발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함.

2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33조, 지방재정법 제110조

3. 주요골자

- 장학생의 선발 :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”에서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”로 변경 (안 제6조제2항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일부개정 건은

-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”가 2005. 7. 31부로 폐지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생 관리에 관한 심의기능이 종전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구정조정위원회로 변경조정하고
- 위원회 변경에 따른 기능폐지와 관련 조문 등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
- 특히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」 부칙에 사하구 복지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근거규정이 명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위 조례 일부개정은 적법타당 하다고 사료됨